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0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성일종·김태호·인요한

고동진 • 박덕흠 • 최보윤

김상욱 • 서지영 • 송석준
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.

이는 안정적인 출산, 유산·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·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특히 다자녀를 출산, 유산·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.

이에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산·사산휴가도 사용

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인 경우 그에 따른 휴가일을 추가사용 할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에 대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·제4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238호) 및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102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 휴가"를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"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"20일"을 "3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 산한 경우에는 40일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배우자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15일(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원) ① ------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「근 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・사산 산전후휴가, 유산・사산 휴가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또는 배우자 유산・사산 휴가--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 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출 산전후휴가급여등"이라 한다) 을 지급할 수 있다. -----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-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 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고 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-----30일(한 번에 둘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 40일)-----

- ②・③ (생 략)
- ①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. <<u>후단 신설></u>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4) -----

-. 이 경우 배우자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1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)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⑤ (생략)